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과정

○ 제출일자: 2023. 9. 27.

○ 제 출 자: 서구청장

○ 회부일자: 2023. 10. 4.(의안번호 제481호)

○ 상정일자: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10. 16.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김미경 생활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운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8조)

- 2023년 12월 31일 → 연장 2028년 12월 31일

○ 조항 정비 및 띄어쓰기 등 문장 정리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특정세입 · 세출을 회계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검토 결과 주요 개정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의 제반 규정에 부합하고 존속기한 연장에 관해서는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는 등 관련 입법 절차를 모두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